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업자 유형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방법 구체화〉

■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174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사업자 유형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방법 구체화 ..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안철수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7. 27.

다. 회 부 일 : 2026. 7.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인공지능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에서는 인공지능 모델·API·생성엔진을 개발·제공하는 사업자와, 이를 활용하여 앱·플랫폼·콘텐츠 서비스 등 최종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상이함. 그럼에도 현행법은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표시의무를 일률 부과하여, 각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표시 방식을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구분하여,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술표준과 상호 운용되는 기계판독 방식으로,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이용 단계별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일률적 규제에 따른 정책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중복 개발비용, 계약상 책임 불명확성 및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리스크 등 규제비용을 줄이는 한편, 인공지능 투명성 규율의 실효성과 국제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사업자 유형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방법 구체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의 이행 방식을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표준과 상호 운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화하고(안 제31조제2항),
- 이를 이 법 시행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생략)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u>표시하여야 한다.</u> <u><신설></u>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u> <u>1. 인공지능개발사업자: 기계가 판독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표준과 상호 운용될 수 있는 방식</u>

현행	개정안
<u><신설></u> ③ · ④ (생략)	<u>2.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u> ③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 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31조제2항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¹⁾함.
- 그리고, 현행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은 생성형 인공지능 표시 의무 이행 방식을 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가시적 표시 방법), ②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비가시적 표시 방법)²⁾으로 규정³⁾하며, 인공지능사업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단, 비가시적인 표시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추가로 제공해야 함.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② 인공지능사업자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2.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이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자는 두 표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 한편, 현행법 제2조제7호가 규정하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정의⁴⁾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의 종류는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개발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나뉘는데,

인공지능 개발 단계와 제품·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이 다름에도 현행법은 사업자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를 구분하여 표시 의무 이행 방식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인공지능사업자의 인공지능 개발·이용 단계별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도록 표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그리고, 기계판독 방식은 국제적 기술표준과 상호 운용되는 방식으로 이행하도록 하여 비가시적 표시방식을 표준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기계판독 방식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서로 다른 기계판독 기술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가 이를 판독하기 위

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하여 필요한 기술을 모두 도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 제31조제2항제1호와 같이 기계판독 방식을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재 인공지능사업자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이하 “딥페이크 생성물”)을 제외⁵⁾한 인공지능 생성물(이하 “일반 생성물”)에 대해서는 가시적 방식과 비가시적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으므로,

안 제31조제2항과 같이 인공지능사업자 종류에 따라 표시 방식을 고정하면 오히려 인공지능사업자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일부 사업자는 규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사업자는 이용자의 제품·서비스 이용을 저해할 수 있는 가시적인 방식보다는 비가시적인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가시적인 방식만으로 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게는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둘째,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므로, 동일한 사업자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

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자의 지위를 중복하여 가질 경우, 일반 생성물에 대하여 가시적 방식과 비가시적 방식을 모두 이행해야 함에 따라 표시 의무가 중복되어 적용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현재 널리 사용되는 대형언어모델인 오픈AI의 ChatGPT, 구글의 Gemini, 엔트로픽의 Claude 등은 그 자체로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면서 모델을 기반으로 챗봇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므로, 각 사업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이면서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짐.
- 이로 인해, 일부 사업자는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표시 의무를 중복으로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어, 중복 규제 부담을 축소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셋째, 현행법은 일반 생성물에 대해서는 비가시적인 표시를 허용하는 대신, 딥페이크 생성물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표시 방식만을 적용⁶⁾하도록 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안 제31조제2항을 따른 경우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일반 생성물과 딥페이크 생성물에 대하여 동일한 표시 의무를 지므로 생성물의 종류에 따라 규제를 차별화하려는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 **넷째**, 현행법 시행령은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표시 의무를 이행할 경우 음성·문자로 1회 이상 안내하도록 의무를 추가하고 있는데, 안 제31조제2항제1호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음성·문자 안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현행법 시행령에 따른 비가시적인 표시방식을 동일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인지, 음성·문자 안내를 제외하고 기계판독 방식만을 이행하도록 하여 표시 의무를 일부 완화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만약 기존의 음성·문자 안내 의무를 유지한다면 안 제31조제2항제1호의 조문에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중검토

- 인공지능사업자별 역할과 책임을 고려하여 표시방식을 구체화하고, 국제 표준과 상호 운용되는 표시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에게 서로 다른 표시 의무를 각각 부과할 경우 동일 사업자에게 표시 의무가 중복으로 적용되어 사실상 규제 강화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인공지능 산업에서는 하나의 사업자가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최종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두 사업자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
- 특히, 현행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발사업자가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표시를 이미 제공하였음에도 이용사업자가 제2항에서 다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의 표시 의무를 별도 부과할 실익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2)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신중검토

- 개정안과 같이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가시적 표시 의무가 강제되는 구조에서 개발사업자가 비가시적 표시 기술을 적용해야 할 실질적·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움.
- 비가시적 표시는 콘텐츠의 시각적·미적 훼손 없이 인공지능 생성 여부를 기계적으로 검증·추적하고, 원본의 출처와 무결성을 증명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하지만, 개정안은 비가시적 표시에 이어 이용사업자에게 가시적 표시를 강제하고 있어 비가시적 표시의 핵심 효용을 무력화시키며, 오히려 효용성이 없는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하여 인공지능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결과적으로, 기업의 중복 개발비용 등 규제비용을 줄이고 투명성 규율

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오히려 기술적 과잉 중복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큼.

-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인공지능 생성물에 가시적 표시가 강제될 가능성이 높아 현행보다 규제 수위가 대폭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현재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기계판독 방식으로 표시할 경우, 현행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인공지능 생성 사실을 1회 이상의 안내 문구·음성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의무 이행이 가능함.
-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규제가 강화되면, 모든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상업적 활용성 및 미관적 측면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콘텐츠 산업 등 전문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3) 한국방송협회: 신중검토

-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이견이 없음. 다만, 위 1항에서 언급한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콘텐츠 서비스 등 최종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인공지능 이용사업자’로 언급되고 있는바, 방송사업자 등이 인공지능 이용사업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6. 1. 22. 공개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에도 정확히 적시된 바와 같이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방송사 등은 명확히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이 불필요한 “이용자”에 해당함.

- 또한, 방송프로그램은 제작 주체에 따라 자체 제작 프로그램, 외주제작 프로그램 및 구매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매 프로그램의 경우 제작사가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연출·제작하고, 방송사는 방영권 구매를 통해 이를 방영할 뿐임. 따라서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시 인공지능 기술 사용 여부는 전혀 알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 그럼에도, 제안 이유 등에는 콘텐츠 서비스 등 최종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언급되어 있어,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 이용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고 ‘방송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의무를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230